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3-379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5. 4. 청구인에게 한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3. 12. 2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이 유

【제2023-379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경부터 현재까지 ○○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비닐하우스 3동(이하 ‘이 사건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3. 5. 4.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7.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3. 5. 4. 청구인에게 한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피청구인은 2021.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이하 ‘이 사건 변상금 부과’라 한다)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별도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불법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관계 법령

-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72조, 제74조
- 2) 「행정기본법」 제12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피청구인은 2021. 7. ~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변상금 부과(변상금액: 〇,〇〇〇,000원)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 2) 피청구인은 2023. 5.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목: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1. ~ 2. (생략)

3. 귀하의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다음과 같이 명하오니, 2023. 6. 5.(월)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내역

가. 처분내용: 원상회복 명령

나. 처분근거: (생략)

다. 처분원인: 국유재산(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〇 외 2필지) 구간 내 하우스 시설 설치 (이하 생략)

3) 청구인은 2023. 7.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판 단

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고(「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국유재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불법시설물을 설치·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상 원상회복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회복명령 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인바, 피청구인이 2021.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고 별도의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2021. 7. ~ 10.)으로부터 불과 약 2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2023. 5. 4.)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두고,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실권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1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등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위법한 상태가 시정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